

#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 (안)

의 번	안 호	4 4 8
--------	--------	-------

제출일자 : 1997. 11. 22.

체출자 : 고성군수

## 1. 개정이유

-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. 임차. 도급.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불일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인에게 입찰 소요경비를 부담케 함으로써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기하기 위함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제1조(목적)에 "입찰참가 신청"을 삽입하고, 제5조(징수방법)에 "입찰참가 신청과 각종"을 삽입함(안제1조, 안제5조)
- 나. 제3조(요율) 제1항 요액의 "별표 1"에 "입찰참가 신청 1건당 10,000원"을 신설하여 개정함(안 별표 1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지방자치법 제128조(수수료), 제130조(사용료의 징수조례등)
- 나. 산청군 조례 상고심 송소관련 일간지(경상일보) 기사 사본

\*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증 "검사등"을 "입찰참가신청 및 검사등"으로 한다.

제5조(징수방법)증 "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"를 "발급신청서, 입찰참가 신청서, 각종 신고서등에"로 한다.

<별표 1>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의 구분란증 (인·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, 확인등) 란의 제8호 상수도관계 다음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 분	기 준	요 액	비 고
9. 회계관계			
(1) 입찰참가신청(공사, 물품의 제조, 구매 및 용역 등의 경쟁입찰)	1건당	10,000원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전 경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,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 및 등록, 지정, 확인, <u>검사등</u>(이하 "제증명"이라 한다)에 대한 수수료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5조(징수방법) 수수료는 고성군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<u>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</u> 징수한다. 다만,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.</p>	<p>제1조(목적) ..... ..... ....., 입찰참가자신청 및 <u>검사등</u>..... ..... .....</p> <p>제5조(징수방법) ..... ..... <u>발급신청서, 입찰</u> <u>신청서, 각종 신고서</u> ....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(별표1)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기 준</th><th>요 액</th><th>비고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&lt;인·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, 확인 등&gt;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 <td>1.~8(생략)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 <td>&lt;신설&gt;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기 준	요 액	비고	<인·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, 확인 등>				1.~8(생략)				<신설>				<p>(별표1)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<th>기준</th><th>요 액</th><th>비고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&lt;인·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, 확인 등&gt;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 <td>1.~8(현행과 같음)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 <td>9.회계관계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 <tr> <td>(1)입찰참가신청 (공사, 물품의 제조·구매 및 용역 등외 경쟁입찰)</td><td>1 건당</td><td>10,000 원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기준	요 액	비고	<인·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, 확인 등>				1.~8(현행과 같음)				9.회계관계				(1)입찰참가신청 (공사, 물품의 제조·구매 및 용역 등외 경쟁입찰)	1 건당	10,000 원	
구 분	기 준	요 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인·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, 확인 등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~8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신설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기준	요 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인·허가, 신고, 신청, 등록, 확인 등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~8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9.회계관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1)입찰참가신청 (공사, 물품의 제조·구매 및 용역 등외 경쟁입찰)	1 건당	10,000 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 第3節 収入 및支는

第126條(地方稅) 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은 預定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稅를 徵收할 수 있다.

第127條(使用料) 地方自治團體는 公共施設의 이용 또는 財產의 사용에 대하여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.

第128條(手數料) ①地方自治團體는 관해 地方自治團體의 事務가 指定人을 위한 것일 경우 그 事務에 대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.

②地方自治團體는 國家 또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委任事務가 指定人을 위한 것일 경우 그 事務에 대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.

③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는 관해 地方自治團體의 収入으로 한다. 그간, 그 등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로 하자 아니하다.

第129條(分擔金) 地方自治團體는 그 財產 또는 公共施設의 設置로 인하여 그 은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 그 이익을 받는 者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分擔金을 徵收할 수 있다.

第130條(使用料의 徵收額例등) ①更用料·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徵收에 관한 사항은 欄例로 정한다.

②前項 기타 보정한 방법으로 使用料·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徵收를 원한 때에 대하여는 그 徵收를 원한 領의 5동이내의 通報장에 公共施設을 부정사용한 데에 대하려는 50萬원이하의 通報장에 원하는 領도를 欄例로 정할 수 있다.

③第3項의 通報장에는 원하는 領도를

## 第131條(使用料의 徵收 - 異議)

①使用料·手數料 또는 分擔金은 12月한 달말으로 결산 또는 6개월마다 계산된다.

②使用料·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徵收는 地方稅 徵收의 데에 의한다.

③使用料·手數料 또는 分擔金의 徵收는 그處分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日以内에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异議申請할 수 있다.

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의 异議申請을 받은 날로부터 60日이내에 이를 認定·통보하여야 한다.

⑤異議를 提出한 者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4項의 規定에決定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規定의 종료를 날로부터 60日이내에 또는 그 認定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認定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60日이내에 관할 地方法院에 評定을 제기할 수 있다.

⑥第3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异議申請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地方民事 第58條의 規定을適用한다.

第132條(經費의 支出) 地方自治團體는 그 自治事務의 수행에 필요한 經費와 雜費는 領에 관하여 필요한 經費를 支拂할義務를 진다. 다만, 國家事務 또는 地方自治團體事務를 委任하는 때에는 이를 委任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그 經費를 負担하여야 한다.

## 第4節 財產 및 公共施設

## 第133條(財產 및 貨物의 設置)

# 경상일보

1997년 10월

15일(수)

제 2575 호

THE KYUNGSANG ILBO

회장 홍남출·발행·편집·인쇄인

## 관급공사 입찰수수료 합당

산청군이 지방자치단체가  
온데 최초로 관급공사 입찰  
참가자에게 수수료를 받은  
것에 대해 대법원이 합당하  
다는 판결을 내렸으므로 전  
국 일선 자치단체가 서둘러  
조례개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.

산청군에 따르면 근이 96  
년 2월부터 6월까지 징수한  
입찰참가수수료에 대해 지난  
해 8월에 제기됐던 「부당이  
의을 반환청구 스승」에서 14  
월 전 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 
기각함에 따라 스스로 징수기

적법하다는 판결을 받게 됐다.

대법원 민사부(재판장 최

대법 산청군 조례인정 반환상고 기각

산청군 제증명 스스로 징수  
조례가 지방자치법 아래 전  
법하게 제정했기 때문에 그  
호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 
수 없다고 판시했다.

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 
일선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

(증명대법관)는 우남로건(주)  
대표이사 마명수씨가 제기한  
「부당이의금 반환청구 스승」  
상고심 선고공판에서 「입찰  
참가자에게만 부과하는 수수  
료를 대다수 국민의 권리를  
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데다

각 지역자치단체 등 국가계  
의법에 따라 관급공사가 발  
주되는 각 기관에서 수수료  
를 받기 위한 해당조례 개정  
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그동  
안 일고 있다.

(산청=장영철기자)

## 지자체 새 세원 개정 잇따를듯

본류기회 보증현황		정	발	통
기	여	수	승	지
제	률	제	률	보
률	제	률	보	증
			전	제